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12.11[총리령 01998호, 시행 2024.12.11] 인사혁신처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1조의2

삭제 <2009.3.30>

제1조의3

삭제 <2009.3.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2018.5.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12.11>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③ 삭제 <2018.5.30> [전문개정 2009.3.30][제목개정 2010.8.2]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24.12.1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3.30]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9.6.25, 2024.12.11>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6.25>
 -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3. 삭제 <2019.6.25>
 - 4. 삭제 <2019.6.2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6.25>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



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12.30>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있다. <개정 2019.6.25, 2021.12.30> [본조신설 2018.5.30]

제4조(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 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 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전문개정 2009.3.30]

제5조(징계의 가중)

-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3.10.12, 2024.12.11>
 -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 가. 강등·정직: 18개월
 - 나. 감봉: 12개월
 - 다. 견책(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6개월
-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24.12.11>
-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1> [전문개정 2009.3.30]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 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2>
-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부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2018.5.30>
 [전문개정 2009.3.30]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 ① 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정계의 종류를 중장계 또는 경장계로 구분하여 적고, 정계부가금의 배수(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8.2>
-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계위원회가 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장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장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2018.5.30, 2020.7.28, 2024.12.11>
-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8.5.30> [전문개정 2009.3.30][제목개정 2010.8.2]

제7조의2(확인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1.3]

제8조(우선심사 신청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3>

[전문개정 2015.8.19]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3.30]

부칙 <제251호, 1981.7.14>

부칙 <제281호, 1983.11.8>

부칙 <제314호, 1986.7.24>

부칙 <제336호, 1987.12.31>

부칙 <제456호, 1994.6.20>

부칙 <제282호, 2005.5.16>

부칙 <제394호, 2007.9.19>

부칙 <제1호, 2008.3.4>

부칙 <제73호, 2009.3.30>

부칙 <제151호, 2010.8.2>

부칙 <제226호, 2011.7.18>



부칙 <제253호, 2011.11.1>

부칙 <제1호, 2013.3.23>

부칙 <제46호, 2013.12.31>

부칙 <제91호, 2014.9.2>

부칙 <제1106호, 2014.11.19>

부칙 <제1189호, 2015.8.19>

부칙 <제1220호, 2015.12.29>

부칙 <제1317호, 2016.8.31>

부칙 <제1356호, 2017.1.10>

부칙 <제1467호, 2018.5.30>

부칙 <제1533호, 2019.4.30>

부칙 <제1549호, 2019.6.25>



부칙 <제1620호, 2020.6.4>

부칙 <제1632호, 2020.7.28>

부칙 <제1663호, 2020.12.31>

부칙 <제1726호, 2021.8.27>

부칙 <제1777호, 2021.12.30>

부칙 <제1852호, 2023.1.3>

부칙 <제1913호, 2023.10.12>

부칙 <제1998호, 2024.12.11>